



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문서번호	TWP-B201
제정일자	2011. 01. 18.
개정일자	2018. 02. 28.
개정번호	5
페이지	1/5

목 차

부칙

작성부서		제정일자	2011. 01. 18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차 장			사무처장	기획예산처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문서번호	TWP-B201	
		제정일자	2011. 01. 18.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일자	2018. 02. 28.	
		개정번호	5	페이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이라 한다) 학칙 제 48조의2에 의거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8.2022.02.25.>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02.25.>

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2.02.25.>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관한 사항<개정 2022.02.25.>
4. 그 밖의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2016.02.18.,2022.02.2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미만이 되도록 하고,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 관련전문가는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이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01.21., 2018. 02.28.,2022.02.25.>

② 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1.09., 2016.02.18., 2018.02.28., 2022.02.25.>

1. 교직원대표 : 3명
2. 학생대표 : 3명 (총학생회장, 대의원의장, 대의원부의장)
3. 관련전문가 : 1명(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16.02.18., 개정 2018.02.28>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신설 2016.02.18.>. <개정 2022.02.25.>


제4조(자격) <삭제 2016.02.18.>

제5조(임명 및 위촉) <삭제 2016.02.18.>

제6조(위원장) <삭제 2016.02.18.>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18.>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B201	
		제정일자	2011. 01. 18.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일자	2018. 02. 28.	
		개정번호	5	페이지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2018.02.28.,2022.02.25.>

② <삭제 2016.02.1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안건 및 회의자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02.25.>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 회의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한다)전까지 통지

2. 회의자료 : 회의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한다)전까지 송부

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학생,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신설2022.02.25.>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한다.<신설 2022.02.25.>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02.18.>

제10조(간사) <삭제 2016.02.18.>

제11조(비밀유지) <삭제 2016.02.18.>


제12조(사무처리) <삭제 2016.02.18.>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4조(관련문서) 이 규정의 관련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법
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부칙

	규정	문서번호	TWP-B201	
		제정일자	2011. 01. 18.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일자	2018. 02. 28.	
		개정번호	5	페이지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6일에 공포된 학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